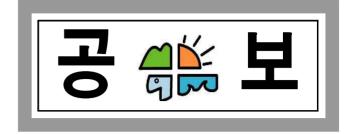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	관 의	장
 람			



제1309호 2021년 2월 5일(금)

공 고

발행 : 공 보 감 사 담 당 관 (전화: 639-3750, FAX: 639-2799)

속초시 공고 제2021-111호

속초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2-40호선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

- 1. "속초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2-40호선) 개설공사"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,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신청서의 열람을 실시합니다.
- 2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(사업인정)에 관한 주민,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,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2월 5일

속 초 시 장

- 1. 사업시행지의 위치: 속초시 교동 656-26번지 일원
- 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- 종류: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2-40호선)
 - 명칭: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2-40호선) 개설공사
-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성명: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대표 최윤성
 - 주소: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(역삼동)
- 4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

시설명	시설의 세분	결정규모	금회 사업규모	비고
도로	소로2-40호선	B=8m, L=117m	B=8m, L=42.9m	

- 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: 실시계획인가일 ~ 2021. 12. 31.
- 6. 열람의 일시 및 장소
 - 일시: 2021. 2. 5. ~ 2021. 2. 22.
 - 장소: 속초시청 건설도시과 도시계획팀
- 7.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

시설명	시설의 세분	시설규모	면적	비고
도로	소로2-40호선	B=8m, L=42.9m	360 m²	도시계획도로 내 설치되는 모든 구조물 또한 귀속

8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(붙임)

■ 토지조서

7,11	그님 샤게이 이내 이모		1.77	지적	편입	소 유 자		소유권 이외의 권리		- N =
구분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 (m²)	면적 (m²)	성명	주소	성명	주소	비고
	계		998	360						
1	교동	656-26	구거	720	119	속초시	속초시 중앙로 183			
2	교동	740-12	대지	7	7	강춘화	속초시 교동 664			
						강*화	속초시 교동 664			4/8
	3 교동 739-15 대지 15				윤*철	속초시 조양동 1501, 부영아파트 508동 1002호			1/8	
3		지 15	15 15	윤*철	속초시 중앙동 479-75			1/8		
				윤*철	속초시 교동 767-224, 럭키설악타운 1차아파트 3동 1202호			1/8		
						윤*섭	속초시 중앙동 479-75			1/8
4	교동	740-4	도로	215	178	㈜한국토지신탁	서울특별시 강남구 데헤란로 309(역삼동)			
5	교동	740-13	철도	41	41	㈜선일디엔씨	속초시 교동로 22, 3층(교동)			

속초시 공고 제 131 호

2021년 속초시 빈집정비사업 공고

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 및 제11조에 따라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되어 붕괴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주변 경관을 해치는 노후 불량 건축물 정비(철거)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2월 일

속 초 시 장

- 1. 사업기간 : 2021. 2월 ~ 6월
- 2. 지원대상
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
-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(공용 주차장, 쉼터, 운동시설, 공용텃밭, 녹지공간 등)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
 - 붕괴,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빈집
 -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빈집
- 3. 지원규모 : 3동
- 4. 사 업 비 : 50,000천원
- 5. 선정기준
 - 붕괴위험 등 노후화가 심각한 건물 우선 선정
 - 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한 자 우선 선정
- 6. 신청 및 선정결과 발표
 - 신청서 접수 : 2021. 2. 8 ~ 2. 19
 - 접 수 처 : 건물소재지 동 주민센터
 - 선정결과 통보 : 건축위원회 심의완료 후(3월 중)
- 7. 문의처 : 시청 건축과(건축행정팀) / ☎ 639-2472

【붙임 2】

2021 빈집정비(철거)사업 신청서

구 분	2021년 빈집정비	(철거)사업 신청서	
신 청 인	성 명	생년월	일
인적사항	주 소	연 락	처
건축물 현황	소유자 성명		
	건축물 주소		
건축주와의 관 계			
철거사유 (자세히)			
비고	- 빈집 철거 후 3년 제공하기로 소유자: - 붕괴, 화재 등 인 - 그 밖에 시장이 ○ 선정기준 - 붕괴위험 등 년	상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 이상 공공용지(공용 주차장, 쉼터, 운동시설 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본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빈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빈집 교후화가 심각한 건물 우선 선정 서를 제출한 자 우선 선정	

【붙임 3】

동 의 서

O 건축물 현황

소 재 지	구 조	규 모	용 도	면 적

- O 소 유 자 :
- O 생년월일:
- O 주 소:
- O 철거보상비 지급 포기 여부

철거보상비 지급 포기	철거보상비 지급 미포기	비고

※ 포기를 원할 경우 '포기'란에 체크, 미포기를 원할 경우 '미포기'란에 체크

상기자는 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2021년 속초시 빈접정비(철거) 사업에 따라 빈집철거 공사 일체를 진행함에 있어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 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.

2021년 월 일

동의인: (인)

첨 부 : 인감증명서 1부.

속초시장 귀하

【붙임 3】

개인정보의 수집, 이용, 제공 동의서

「개인정보보호법」

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있다.

제17조(개인정보의 제공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(공유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.) 할수 있다.

- 1.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
- 2. 제15조제1항제2호·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 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 - □ 개인정보의 수집, 이용, 제공에 관한 사항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동의자 : (서명 또는 인)